

광주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가단5172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1. 2. 19.

판결 선고 2021. 3. 19.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6.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2002.경 주식회사 E로부터 여신한도금액을 3,000,000원으로 하여 종합통장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2) 이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소2231893호로 이행권고결정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2.

22. 'D은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8,674,659원 및 그 중 3,281,089원에 대하여 2005.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그 후 D에 대한 위 채권을 전전양도 받은 F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5870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G조합 등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9. 인용결정을 받았고, 다시 위 채권을 전전양도 받은 H 주식회사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667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여 2016. 2. 18. 'D은H 주식회사에게 8,674,659원 및 그 중 3,281,089원에 대하여 2005. 12. 7.부터 이 사건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9. 8. 19. H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20. 4. 10.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원고는2020.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6676호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그 승계집행문등본이 D에게 송달 중이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1) D의 모(母)인 망 I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9. 6. 24.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와 D, J, K이 있는데, 피고는 2019. 6. 24. D, J, K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19.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자력상황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3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무자 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0.경 무렵부터 망인을 부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원리금, 재산세, 의료보험료, 전기료, 기타 공과금을 지급하여 왔고, 2010.12. 29.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채무 중 16,000,000원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의 기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이와 같은 사정 및 망인의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D이 채무 초과 상태인 사실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기여분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분을 산정할 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피고는 망인을 부양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의 기여분이 100%에 이른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와 관련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와 상속인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 속에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하여 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상속인들의 협의로 일부 상속인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기여분을 정하였다면 이러한 합의 또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6,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1억 원 후반대일 것으로 보인다), 위 16,000,000원 변제 이외에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거나 망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피고의 적정 기여분을 100%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 D의 구체적 상속분이 그의 법정상속분(1/4)과 다르다거나, D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결과가 D의 구체적 상속분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계약인수를 이유로 피고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거나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명화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L 대 195 m'

2. [건물] 광주광역시 동구 L

위 지상 목조세멘와즁평가건주택

건평 3평4홉

부속건물

목조세멘와즁평가건주택

건평 8평2홉

목조세멘와즁평가건주택

건평 6평3홉

목조스레트즁평가건주택

건평 7평2홉

목조세멘와즁평가건주택

건평 20평6홉

목조세멘와즁평가건주택

건평 6평9홉

3.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M 대 20.7 m'

4. [건물] 광주광역시 동구 N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접포

139.83m'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점포

153.38 m² 중 42,980분의 2,074 지분. 끝.